

[별표 2]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 반환금은 백원단위 절사된 금액으로 반환 -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 9월 8일 개강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 9월 9일 포기 시 환불 금액 월 수강료 10,000 × (2/3) = 6,600원